



2022년 학교배상책임공제 시행 안내

피공제자(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한 학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교 직원 노무업무 중 발생한 제3자 인적·물적 사고도 보상해드려요!



예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급식 조리

※ 시설물 관리업무를 제외한 학교장 지시에 따른 노무업무

시설물 관리업무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부터 제7호에서 정의한 교육시설안전사고 및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교육시설안전사고 및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활동 중 발생한 사고란?

교내 수목의 전정작업 중 떨어진 나뭇가지에 의한 차량 파손, 교내 배수로, 맨홀 뚜껑 등의 결함에 의한 차량 파손, 강풍 등으로 인해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사고 등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 파손사고 청구는 곧바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청구하세요!

개정 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차량 수리비용 선 결제 후 관련자료(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등)를 준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청구

개정 후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수리 업체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관련자료 직접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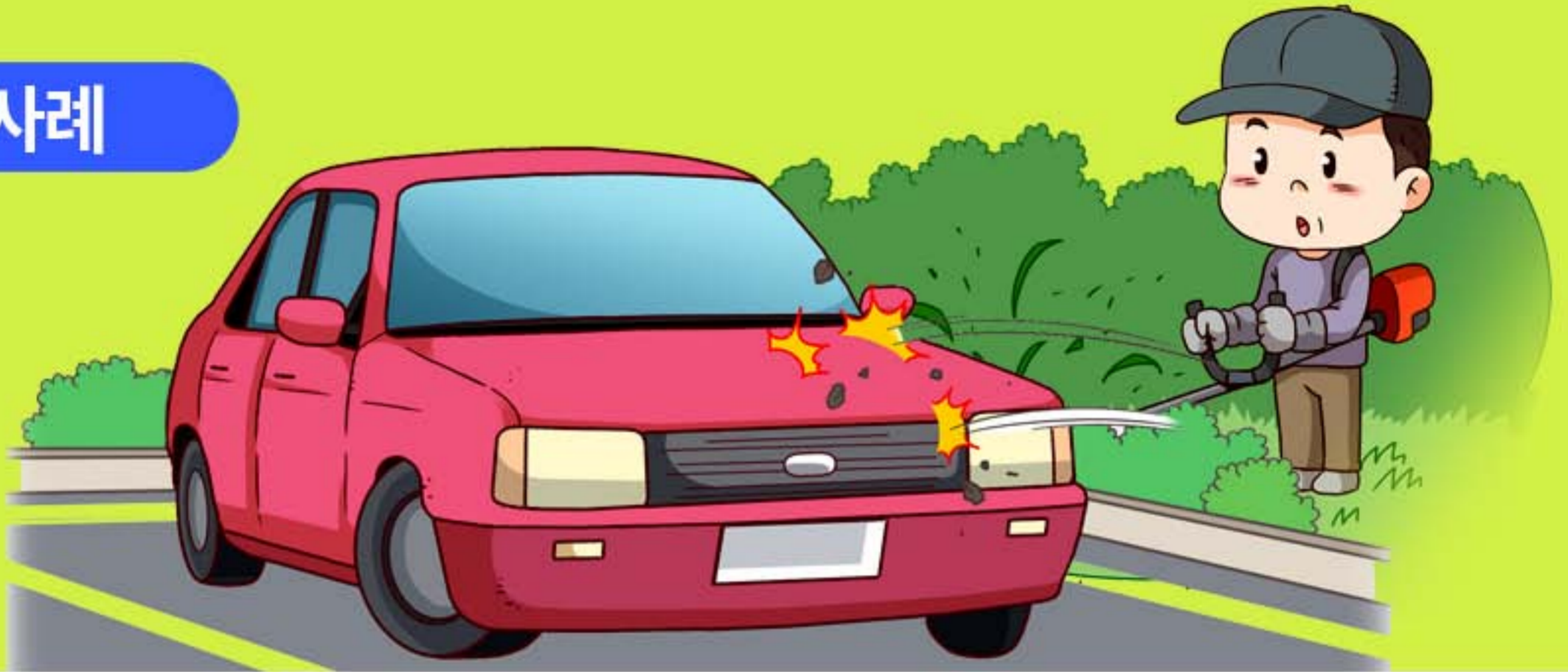
공제가입자(학교장)는 정비업체 등에서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수리내용(견적서 등)에 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승인절차: 차량 정비업체 입고 → 정비업체는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하여 공제중앙회에 견적서 등 송부 또는 유선통지 → 승인(공제중앙회)



안전불감증 사고 예방을 위해 이렇게 바꿨어요!

사례



예초작업 반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이동 조치 없이
진행되어 파편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개정 전

적정손해액 보상

개정 후

적정손해액의 **30% (가해자 부담분)**
공제 후 보상



※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 제10조제5항에 따라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인·대물 손해를 입힌 경우 자기부담금 설정

도덕적 해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례

경미한 파손(기스, 광택 또는 도색손상 등)의 경우에도
부품 교환 수리,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외 인접부위 수리

개정 전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수리비용 인정

개정 후

과잉청구방지를 위해 경미한 파손의 경우, 교체 및 파손
인접부위에 대한 편승수리 불인정

※ 공제가입자(학교장)는 피해자에게 정비업체 등에서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수리내용(견적서 등)에 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함

휴대품 관리소홀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이렇게 바꿨어요!

휴대품?



분실피해 보상한도 설정

휴대품 1대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 휴대품 피해 손해배상 특별약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월수를 감안하여 감가상각 적용

< 관리소홀 등에 따른 피해보상 제외 >

- 학교의 학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거한 경우
- 교사 개인 소지, 교탁, 개인서랍 등에 방치 또는 보관한 경우
- 보관 장소에 시건장치가 없는 경우
- 시건장치의 열쇠 등을 교사 외 타인이 사용한 경우
- 휴대품을 담당교사 임장 하에 수거, 반환 또는 이동하지 아니한 경우

